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 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 대법원 : 1997. 5. 9. 판결 96누27140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1997. 5. 9. 선고 96구27140 판결
- 주 문 :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 판시사항

석면 등 혼합성 진에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섬유증이 발병하고 그것이 폐선암으로 발전하여 수술치료 중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판결요지

망인은 20여 년간 정비공으로 운수회사, 해외 건설현장 및 콘크리트 판넬 제조회사 등에서 차량 및 기계의 정비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분진, 석면, 등의 혼합성 진에에 장시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폐섬유증에 걸리게 되었고, 그것이 폐선암으로 발전하여 그 부위에 대한 절제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인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판결이유

####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4, 5호증의 각 2, 갑제6호증의 1내지 5,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은 1991. 1. 경 콘크리트 판넬 제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천공장에서 정비공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1994. 10. 15. 폐섬유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1995. 7. 10. 폐선암으로 진단받아 같은 달 27. 위상엽절제술을 받고 입원 가료 중 같은 해 8. 27. 19:15경 직접사인 성인성 호흡부전증, 중간선행사인 폐섬유증에 기인한 폐선암, 선행사인 폐섬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5. 10. 26.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섬유증이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8, 9, 11호증, 을제2 내지 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4, 을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과 당원의 서울○○병원 및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51. 11. 1.생으로 1969. 2.경부터 1969. 8.경까지는 ○○공업사에서, 1969. 8.경부터 1972. 8.경까지는 ○○운수에서, 1975. 9.경부터 1986. 3.경까지는 ○○○주식회사에서, 1986. 7.경부터 1990. 10.까지는 ○○○주식회사의 중동 등 해외 건설현장에서, 각 자동차 등 기계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1. 1.경부터는 위 ○○○주식회사의 이천공장에서 차량 및 건설장비, 기계장치 등의 정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위 ○○○ 이천공장에서는 건축자재인 콘크리트 판넬의 생산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에서는 기술감독과 기계 및 차량에 대한 점검, 정비를 하나 그 하수급업체는 위 ○○○ 이천공장내에 있는 작업장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원료로 레미콘 생산설비인 빗차플랜트, 시멘트 운송장비인 페이로더, 타워크레인 등의 기계 및 차량을 이용하여 판넬을 제작 생산하는 관계로, 위 이천공장은 소음이 많고 연재석 분진이 검출되는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이에 따라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 한계치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소음과 조명에 대하여는 위 각 해의 상, 하반기 모두 측정을 실시한 반면, 분진에 대해 1992년 상반기, 1993년 상, 하반기 등 3차례만 실시하고, 1992년 하반기 및 1994년 상, 하반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것도 위 공장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 국한함으

망인은 20여 년간 정비공으로 운수회사, 해외 건설현장 및 콘크리트 판넬 제조회사 등에서 차량 및 기계의 정비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분진, 석면, 등의 혼합성 진에에 장시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폐섬유증에 걸리게 되었고, 그것이 폐선암으로 발전하여 그 부위에 대한 절제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인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로써 공장내의 정비실에 대하여는 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망인은 차량과 기계를 청소하고, 보소, 수리하기 위하여 엔진오일 및 구리스 교환, 에어크리너, 세르모타 교체, 브레이크 라이닝 및 클러치 라이닝 교체, 스팀밸브 및 에어 밸브 교환, 용접 등을 주로 하고 그밖에 도색작업, 전기용접, 철판관금, 물탱크 청소 등 기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이천공장내에는 정비실이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작업은 주로 정비실 이외의 분진이 상존하는 위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원료를 운반하는 트럭이나 지게차 범크레인을 정비하거나 생산에 사용된 기계부품을 수리할 때에는 콘크리트 먼지로 인해 작업에 곤란을 느낀적이 많았다.

(4) 위와 같이 망인은 위 0000의 근무를 포함하여 20여 년간 자동차 및 기계류

의 정비를 하여 왔는데, 자동차 부품 중에는 석면으로 된 브레이크라이닝, 크러치디스크 라이닝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거나 또한 운수회사와 해외 건설현장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많았고, 더욱이 위 0000에서 각종 기계의 차량을 정비하면서 마스크 등 보호장구없이 기계수리업무를 함으로써 각종 분진을 다량 흡입할 수밖에 없었다.

(5) 그런데 망인은 1994. 7. 25.경 심한 기침을 동반한 감기증세가 있어 소외 금강병원에서 기관지확장증의 간디스토마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 15.경 서울 00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되어 2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계속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해 11. 14.부터 다시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1995. 7. 10.에는 오른쪽 폐부위에 결절이 나타나 폐선암

으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어 같은 달 27. 우상엽 절제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수술 후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인성 호흡부전증으로 같은 해 8. 27. 사망하였다.

(6) 폐섬유증은 폐간질에 발생하는 병으로 그 발병원인이 되는 요인으로는 130개 이상이 보고되고 있어 많은 경우 그 원인을 발견하기 어려워 특발성 또는 원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그 주요 유발요인은 흡연, 이온화된 방사선 및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석면 등의 혼합성 진애 등이며, 유전적, 체질적 요인은 극히 드물고, 또한,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대개 10년 이상 노출시 폐섬유증 등의 질병이 야기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리 많지 않은 노출에 의하여도 야기될 수 있고, 또한 과거의 노출로 인해 발병할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한편 폐섬유증은 폐암의 발생위험성을 증가시키고, 특히 폐간질에 발생하는 폐선암의 경우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망인의 경우 혼합성진애에 의하여 폐섬유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손상된 반흔에 선종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9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여 년간 정비공으로 운수회사, 해외 건설현장 및 콘크리트 판넬 제조회사 등에서 차량 및 기계의 정부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분진, 석면 등의 혼합성 진애에 장시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폐섬유증에 걸리게 되었고, 그것이 폐선암으로 발전하여 그 부위에 대한 절제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인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